

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.

1. 장애학생
2. 외국인학생
3. 다문화가족학생
4.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 학생

제 2 장 지원범위 및 운영

제3조 (관련위원회)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 단, 외국인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4조 (담당부서) ①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조 제1호, 제3호, 제4호의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학생처에서 담당한다.
2. 제2조 제2호의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국제교류원에서 담당한다.

②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유관부서 및 학부(과)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.

제5조 (지원범위)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.

1.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2. 대학생활 및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
3. 학업 동기부여를 위한 장학금 지급
4.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
5.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
6. 취·창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7. 멘토 제도 지원 사항
8.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 장 장애학생, 다문화가족학생, 북한이탈주민 학생 지원

제6조 (학사지원) ① 장애학생, 다문화가족학생,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본교에서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.

② 학생처는 학사 담당부서 및 소속 학부(과)의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.

제7조 (행정서비스 지원) 학생처와 행정 담당부서는 장애학생, 다문화가족학생,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입생 입학 면접전형 지원, 학생생활상담소의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(공통)
2.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(공통)
3. 신입생 및 재학생 수강신청 도움(공통)
4. 신입생 및 재학생 휠체어 이용학생 수강과목 강의실 조정(장애학생)
5. 출석부 장애 영역 표시(장애학생)
6. 장애 영역에 따른도우미 섭외 지원(장애학생)
7. 멘토링 제도 운영(학습 및 교내 생활 지원 도우미 지원)(공통)
8. 간담회(년 1회~ 2회) 진행(공통)
9. 장학금 지급 추천(공통)
10. 장학금 신청서 등 학사행정 서류접수 도움(공통)
11. 교내 학습 활동용 장비 지원 및 대여(장애학생)
12. 진로상담,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(공통)
13. 장애학생지원 위원회 관리(장애학생)
14. 기숙사,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 지원(공통)
15. 대학편의시설 지원(장애학생)
16. 기타 학생을 위한 제반 업무

제 4 장 외국인 학생 지원

제8조 (학사지원) ①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의 학업중도이탈을 방지하고 본교에서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② 외국인 학생의 학사지원 세부사항은 ‘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원 내규’에 따른다.

제9조 (학습 및 생활지원) ①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생활 관련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.

② 외국인 학생의 학습역량, 진로 및 심리상담, 취·창업관련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, 국제교류원에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인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③ 외국인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원 세부사항은 ‘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원 내규’에 따른다.

제 5 장 기 타

제10조 (준용규정) ① 장애학생은 ‘장애학생지원 운영 규정’을 따르고, 외국인 학생은 ‘국제교류원 운영규정’ 및 ‘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원 내규’에 따른다.

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,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되, 2020. 3. 1부터 적용한다.
2.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「다문화가정학생 등 소수집단학생 지원 지침」을 폐지하고 본 규정으로 대체한다.